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4
----------	-----

제안연월일 : 2023. 8.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도모.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대관령면에 설치함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 및 지역 내 아동 안전·보호 체계 구축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활용,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운영 및 관리 전반
- 사무내용
 - 이용 아동에 대한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인력운영 : 센터장 1, 팀원(시간제) 1~2명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3-19 (舊대관령유치원)
- 시설규모 : 연면적 127㎡, 지상1층 (※정원 20명)
- 구 조 : 놀이공간, 활동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입지조건
 -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연계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함
 -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 4개소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 이용 아동의 안전 및 학교 또는 집을 기준으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
- 규 모 : 전용면적 66㎡ 이상
- 구조 및 설비 :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 등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11. 01. ~ 2028. 10. 31. (5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전문성 및 의지, 재정운영 책임성 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139백만원 (국비 42, 도비 21, 군 76)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급·간식,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등)
 - ※ 매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적정함.
-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아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향후 전문기관 컨설팅, 종사자 교육,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예산 및 행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경과) 및 향후계획
 -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예산 확정 (70백만원) : 2023. 1. 2.
 - 다함께돌봄센터(대관령점) 무상사용대차 협약체결 : 2023. 4. 17.
 - ※ 소유자 박순옥(대관령면), 사용기간 2023. 7. 1. ~ 2028. 12. 31.
 - 다함께돌봄사업 리모델링 공사 : 2023. 5. ~ 8.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사 : 2023. 9. ~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개소 : 2023. 10. ~ 11.
- 관련자료
 -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무상사용대차 협약서 1부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자료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무상사용대차 및 관리운영 협약서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박순옥(이하 “소유자” 라 한다)은 다함께돌봄센터 대관령점 설치·운영을 위해 아래 표시 공간 및 그 부속시설(이하 “공간 등” 이라 한다)의 무상사용대차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공간 등의 표시]

위 치	황계리 343-19번지
건축규모	지상 1층 127㎡ (※ 도면 별첨)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공간 등의 장기 무상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작성한다.

제2조(무상사용) ① 공간 등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 에게 있으며 “소유자” 는 공간 등을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군” 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소유자” 는 공간 등을 별첨 설계도면대로 “군” 에게 인도하며 “군” 과 합의하여 이 협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공간 등의 인도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기간) “군” 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6개월간 공간 등을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군” 과 “소유자” 가 협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도제한) “군” 은 공간 등을 센터 운영 사업만을 위해 점유·사용해야 하며 그 관리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5조(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① “군”은 공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공간 등의 자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 및 유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군”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간 등이 파손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이 공간 등의 원시적 하자와 상관없는 센터 운영상의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군”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간선시설의 사용 및 관리비 등의 납부) ① “군”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증설·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군”은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센터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시설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다.

제7조(행위금지 등) “군”은 “소유자”의 공간관리에 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간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정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간 내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공간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제8조(운영 등) “군”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영 운영 또는 별도의 운영자(이하 “수탁 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과 “소유자”가 체결한 협약서는 “수탁운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군”과 “수탁운영자”의 계약내용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소유자”는 협약이 해지될 때에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군” 또는 “소유자”가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명도) 다함께돌봄센터 사용기간의 종료 및 협약 해지 시 “군”은 시설을 “소유자”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기자재는 “군”에서 수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임)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기타사항) 상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4월 일

협약자 평창군
 평창군수 심 제 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소유자 박순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19-4

관계법령 발취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